

보건복지 동향

주요법률의 제·개정내용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
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184회 임시국회 통과법안(개정)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함(안 제6조).
- 노년 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23조).
-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24조).
-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및 관리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 노인재활치료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 노인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함(안 제31조).
-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임대·분양 등을 허용함(안 제32조).
-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의료시설의 이용대상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노인도 이용할수 있도록 함(안 제32, 34조).

- 치매·중풍등 중증질환 및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의료시설, 유료노인전문의료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경로연금과 노인보건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 생활보호법

-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호).
-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노인,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상실자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포함함(안 제3조).
- 최저생계비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보호실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제5호 및 제5조의 2).
- 생계보호의 내용에 주거에 필요한 금품 등 생존적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교육보호의 내용에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학업보조비 지원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및 제12조).
-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가와 피보호자의 참여범위를 넓힘(안 제16조).
- 보호기관이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청장을 보호기관으로 추가하고 보호비용중 지방비 부담분을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36조).
-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외에 구두로도 생활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호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안 제39조).

-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자활후견 기관은 자활공동체를 조성·지원함(안 제11조의 2 및 3).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 등 그간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 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함(안 제7조).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 사회복지사 자격을 1·2·3등급으로 법에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2조).
-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는 업무상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 겸직을 금지토록 하고, 임원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며, 기본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함(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의 중앙협의회와 그 지부를 각각 독립법인으로 함(안 제33조).
-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시설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의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회복지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법정단체로 함(안 제46조).

□ 한국한의학연구소법

- 한국한의학연구소의 명칭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사업에 한의·약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사업과 한약재의 유효성·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함(안 제6조).
-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두는 임원중 이사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여 한의·약 연구의 효율성을 높임(안 제7조).
- 연구원에 두는 이사중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전체 이사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함(안 제7조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 현대의학의 발달로 장기이식은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장기이식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식 장기의 공급부족으로 장기매매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이식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장기매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적인 장기이식사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 주요골자

- 누구든지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장기기증자와 장기수증자간에 장기를 매매하는 경우와 타인의 장기 매매를 알선·교사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49조).
-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살아 있는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은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

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가족에 대해서만 장기기증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 사망한 자의 장기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배우자, 성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성인인 형제자매중 앞선 순위의 유족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안 제16조 및 제17조).
-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자 판정을 받은 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뇌사판정기준은 법률에 정하였음(안 제19조).
- 뇌사자가 장기적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하였음(안 제19조).
- 뇌사자 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내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판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0조).
- 장기이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 법조계 및 장기이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안 제22조).
- 생명윤리위원회 안에 장기이식심사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미성년자 장기기증 동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대상자 선정 동의)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안 제2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뇌사자 판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24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기증등록자와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관리업무와 장기이식에 필요한 의학적 정보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5조).
- 장기의 수여와 공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이식의료기관

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안 제28조).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은 장기이식관리본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9조).
-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이식의료기관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32조).
-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위반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음(안 제47조 및 제48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하고자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마련, 7월 3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입원심사 기능을 보완하여 마약류중독자 입원을 신속하게 함(제5조).
- 검사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중독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입원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입원 신청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까지 입원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제9조 및 제10조).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증중독자를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경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여 중복 심의를 피함(제15조 제1항).
- 마약중독자의 퇴원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치료보호기관의 장도 퇴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퇴원조치를 간소화 함(제18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급·배기관청소(다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로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공중이용시설의 급·배기관 청소(다트)제도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 제도의 장·단기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1. 단기대책: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청소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기준중 먼지 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실시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허용기준중 먼지 허용기준이 1m³당 0.15mg을 초과한 경우에 1년 이내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토록 하는 등 소유자의 실내환경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3년에 1회 이상 청소 의무규정은 폐지함.
-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청소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급·배기시설을 청소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청소의 종류 및 대상으로는 공기정화기와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 포함),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용 배기관, 중앙집중식 냉·난방 급·배기구, 공기정화기 본체 등이며, 소방용 배연관은 청소대상에서 제외함.
- 공중이용시설 청소실시 의무기한 폐지
 -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1996년 8월 20일 기준 3년경과 건축물은 1997년 8월 19일(3년 미경과 건축물은 3년이 경과된 후 1년 이내)까지 청소토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실내환경기준의 먼지 허용기준을 초과한 때에 청소를 실시토록 함.
- 청소대행자 보고의무 강화
 - 실내공기 정화청소 대행자가 청소를 실시한 때에는 청소필증의 교부, 청소실시 사항 기록보관, 청소실적의 보고사항 등을 의무화함.
- 실내환경에 대한 검사결과의 관리 강화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담당자, 소유자 및 정밀검사기관은 실내환경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2년간 보관토록 함.

2. 장기대책

- 공중위생법 개정

-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 미이행시 벌금의 상향조정 검토(예: 200만원→500만원)
- 의료기관, 호텔 등 청소대상시설 확대 및 반도체 제조공장, 무균실 등은 청소대상 시설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 현행 실내환경기준은 급·배기관 청소제도 시행 이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동 기준은 조속히 보완

1993년 영아사망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3년 영아사망을 조사결과, 출생아 1,000명당 9.9로 나타났으며 영아사망률이 10 이하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의 출생아를 조사하고, 그 출생아가 첫돌 이전에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분만관련자료, 의료보험자격관리자료, 장제비지급자료, 내무부의 주민등록자료를 연결하여 전산처리하였고, 동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출생과 사망은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조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조사결과

- 1993년 영아사망률 9.9, 신생아사망률 6.6, 신생아후기사망률 3.3임.
- 영아사망률 남녀 성비는 신생아사망, 신생아후기사망, 영아사망이 모두 114.1이었음.
- 영아사망률은 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임.

〈1993년 출생코호트 영아사망률〉

구 분	남	여	계
신생아	7.0	6.1	6.6
신생아 후기	3.6	3.1	3.3
영아	10.5	9.2	9.9

주: 신생아사망은 출생후 28일, 신생아후기사망은 29일부터 첫돌까지, 영아사망은 출생후 첫돌 이내에 발생하는 사망임.

〈모 연령별 영아사망률〉

모연령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후기 사망률	영아 사망률
14~19	5.5	1.9	7.4
20~24	4.7	2.5	7.2
25~29	5.7	2.9	8.6
30~34	8.0	3.3	11.3
35~39	12.9	4.9	17.8
40 이상	19.5	15.6	34.8
전 체	6.6	3.3	9.9

1995년도 한국인 암등록 조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중 수위를 차지하는 암과 관련하여 1995년도 암등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암등록사업은 암발생현황 및 기초연구와 치료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8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 결과는 1995년 현재 전국 149개 암등록지정 병원중 110개 병원에서 암환자에 관한 등록자료를 제출받아 국립의료원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 주요 결과

- 1995년도중에 암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암등록환자는 64,761건으로 이중 남자 55.5%, 여자 44.5%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55.6% : 44.2%)을 보였음.
- 초진연령을 연령구간별로 나눠보면 55~59세가 14.4%로 가장 높았으며, 15세 미만의 소아암은 1.7%였음.
- 암의 장기별 발생빈도는 위암(21.6%), 간암(11.5%), 폐암(11.2%), 자궁경부암(9.4%), 대장암(8.2%), 유방암(5.3%)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위암(26.1%), 간암(16.3%), 폐암(15.7%), 대장암(8.1%), 방광암(3.2%), 식도암(3.2%), 조혈기관암(3.0%)의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경부암(21.1%), 위암(16.1%), 유방암(11.9%), 대장암(8.4%), 간암(5.6%), 폐암(5.6%), 갑상선암(5.2%), 난소암(3.3%)의 순이었음.

- 지난해와 비교할 때 남·녀 모두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암의 양상은 비슷하였으나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15세 미만의 소아암은 1995년도에 1,130건(1.74%)으로 1994년 1,111건(1.82%)과 비슷한 수준이며 남아가 57.0%(644건)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아에 비해 높은 수준임. 소아암은 백혈병(33.7%), 중추신경계암(18.4%), 림프종(7.8%), 연부암(5.7%), 골암(5.4%), 신경아세포종(5.0%)의 순이었으며, 0~4세 사이가 512건(45.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임.

1998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 확정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는 1997년 6월 3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개최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1998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다. 1998년까지의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보건산업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분야, 정보화기반구축 등 5개 분야에 총 26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26개 과제중 6개 과제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본격운영 및 대상범위를 확산중이며, 7개 과제는 일부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과제는 현재 사업에 착수중이거나 계획수립단계에 있다.

1)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 사업

장애인재활, 사회복지자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생활보호정보관리 시스템, 요보호아동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장애인재활정보, 사회복지자원정보, 아동보육정보 서비스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장애인재활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및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각각의 정보DB를 구축하여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생활보호정보관리시스템, 요보호아동정보시스템구축 사업도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목표로 현재 사업추진을 계획중에 있음.

2) 보건산업분야의 정보화 사업

식품위생관리, 수입식품관리, 의약품관리, 의료용구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데 식품위생관리 정보화는 1998년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프로그램

보급 및 통신망 구축과 수입식품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수입식품검사업무 정보화사업은 1997년까지 구축 완료되는 수입식품검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며,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업소관리, 안전성·유효성 관리, 유통관리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약품관리 정보화 사업은 의약품 허가·신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관간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구의 허가관리, 시험검사관리, 안전성·유효성관리, 유통관리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용구관리 정보화 사업은 의료용구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한 단위업무를 개발할 계획임.

3)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사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구축, 보건의료정보DB구축, 혈액유통정보관리시스템구축, 국립암센터정보시스템구축 사업등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국민 건강보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은 보건기관의 행정·진료·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표준 S/W를 개발하여 1996년부터 경기도내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동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1998년에는 기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개발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확대개발을 통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원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보건사업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의료시설·인력·장비·이용·재원정보에 대한 보건의료정보DB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프로토타입을 구축할 계획임. 또한 국립암센터 설립에 대비하여 1998년까지 병원내 네트워크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1999년까지 암등록사업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암정보 DB를 구축하며, 2000년까지는 PACS시스템 개발을 완료시킬 계획임.

4) 사회보험분야의 정보화 사업

의료보험종합정보화, 국민연금정보화 등 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보험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1997년까지 진료비 청구 심사 시스템 및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998년에는 그간 노후화된 전국 조합의 전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전국민 연금실시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확대 개선 및 전자주민증 등 관련 부처간 연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임.

5) 보건복지정보화기반구축 사업

1997년에 보건복지부내에 통합OA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복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199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고, 향후 관련분야의 정보공유를

쉽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정보 표준화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들 사업의 효율적이고 획일적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정보관리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998년에 6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국고 140억원, 초고속기금 44억원, 이용기관 자체부담 43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1997년 6월말 현재 HIV 감염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4명의 HIV(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누적수는 679명이라고 밝힘. 한편, 이 기간동안 11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11명이 사망함.
- 감염요인이 알려진 경우의 약 90%가 동성연애를 포함한 성접촉을 통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38%, 20대 35%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인 20~30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의 성비는 7.2 : 1의 수준임.
-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예방에 관한 신문광고의 실시에 이어 유흥업소 등에 홍보물(벽걸이 온도계)을 제공하였고, 동성연애자를 대상으로 한 만화책자(제목: K에게)를 특별히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1997년 암정복추진 연구개발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질병별 사망원인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기초조사 및 암관리정책 개발을 통하여 국민보건의료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199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총 50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다.

□ 1997년 암정복추진 연구개발과제의 분야별 분류현황

- 1997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과제는 총 14과제로 발암기전에 관한 연구 3과제, 암의 전이에 관한 연구 1과제, 중앙면역에 관한 연구 1과제, 암의 발병요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 2과제, 암 진단법 개발에 관한 연구 2과제, 암 치료법 개발에 관한 연구 3과제, 암 관리에 관한 연구 2과제임.

- 1996년도에 선정되어 계속 연구될 과제(계속과제)는 총 34과제로 암연구 및 연구지원 23과제, 암 정보 및 교육홍보 4과제, 암 역학 예방 및 조기진단 6과제, 암 관리 조직 및 예산 1과제임.
- 특별과제로는 첫째, 암등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등록대상병원과 그 밖의 미등록대상병원 및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암환자 발생현황을 정밀 수집·분석하고, 둘째, 1999년 개원을 앞둔 국립 암센터의 운영을 위한 국립암센터 기본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연구를 특별과제로 선정하였음.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판매허용량 지정』 고시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자 개정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후속조치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판매허용량 지정』을 1997년 7월 12일자로 고시함. 동 고시의 대상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텍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진해거담제)이고, 1회 판매 허용량은 450밀리그램임.
-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경우 그 허용량 범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시에는 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기입하고 이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은 1차 위반시는 업무정지 3일, 그 이후는 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로 가중됨.